

유흥업소 특소세 확대 검토

레스토랑·카페등 사치성 대중음식점 여신금지 대상업종에 관광호텔 포함

정부는 유흥서비스업이 지나치게 팽창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매출액의 10%에 해당하는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사치성 일반 대중음식점(레스토랑, 카페등)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.

또 관광호텔도 여신금지대상업종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강구 중이다.

경제기획원은 10일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'유흥서비스업 서비스산업 규제방안'을 마련,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.

억제방안에 따르면 현재 접객 여성의 고용이 허용되고 있는 전문유흥업소와 건평 1백평·대지 2백평 이상 규모의 고급 대형음식점에 대해서만 부과하는 특별소비세(매출액의 10%)가 앞으로는 건평 50평 대지 1백평 이상 일반 대중음식점까지 확대된다.

또 사우나, 나이트클럽, 룸살롱, 전자유기장 등 기존의 여신금지 호화사치성업종 범위에 관광호텔도 포함, 은행대출이 규제된다.

정부가 이같은 유흥사치성업종에 대한 세제·금융상 규제방안을 마련한 것은 이들 업종이 일반

제조업체보다 높은 수익률을 올리는 한 제조업 인력난이 근본적으로 해소되기 어렵다고 분석되고 있기 때문이다.